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

청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청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: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🦤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- 제33조[결격사유]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나. 장소 : 청완초등학교 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- 다. 기간 : 2021년 4월 5일 ~ 4월 8일까지 (09:00~16:00) (4일간, 근무시간 중)
-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통 (행정실 비치, 학교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- 가. 선거방법 및 기간: 직접투포(전자투표-온라인시스템)
 - 전자투표: 2021년 4월 15일(09:00 ~ 14:00)
- 나.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인원 : 1명
- 다. 소견발표: 입후보자 등록서의 입후보 소견내용(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)
- 라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1년 4월 12일 ~ 4월 14일 (행정실)
- 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1년 4월 2일

청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